통진당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상대 제소

1. 제소 필요성

◆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결정을 하지 않았지만,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근거로 퇴직을 통보하였음

◆ 의원직 상실은 소속정당 해산의 본질적 효과로서 헌법재판소의 상실결정이 없더라도 정당해산의 당연한 결과임

◆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구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고, 지방의회 사무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

◆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

2. 구체적인 제소 방법

◆ 소송의 종류 : 공법상 당사자 소송(지방의원지위 부존재확인소송)

◆ 원고 : 해당 지방자치단체(예, 경상남도 △△△시)

◆ 피고 :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

◆ 청구취지 : 000는 경상남도 △△△시의회 의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◆ 청구이유

□ 확인의 이익(본안 전 요건)

○ 000는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시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,

수당을 지급을 구하고 있으며 시의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고 또 계속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법률적 지위 불안

- ㅇ 시의원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므로, 확인의 이익이 있음

□ 청구이유 주장 1 개요

- ㅇ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당연한 효과 ⇨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결정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지역구 지방의원도 의원지위상실(헌재는 법무부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의원직 상실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상실을 선고하였을 뿐임)
- ㅇ 근거 ⇨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, 의원의 정당 기속성,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
- ㅇ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이와 유사함

□ 청구이유 주장 2 개요

- ㅇ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(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)의 '해산'은 자진해산만을 의미함
- ㅇ 따라서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 된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위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퇴직되고(헌재의 별도 상실선고 불필요), 지역구 지방의원 역시 헌법상 정당해산제도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취지, 정당 기속성 등에 있어서 비례대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, 따라서 헌재의 상실선고가 없었더라도 통진당 강제해산결정에 따른 위 공선법 규정의 당연한 효력으로 의원직 상실하였음